

# *In depth*

## A look at current financial reporting issues

February 2015  
No. 2015-06

### *IFRS 11 Joint arrangements – Implementation issues considered by the 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 **What are the implications?**

##### *At a glance*

IFRS 11은 널리 적용되기 전부터 IFRS 해석위원회(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에 많은 이슈가 제기 되어 왔다.

동 해석위원회는 2014년 11월에 이러한 이슈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내용이 기준서 적용 시에 참고가 될 것이며, 특히 공동영업으로 분류되는 ‘사실과 상황’을 더 분명히 하고 있다.

본 In depth는 IFRS 해석위원회의 잠정적인 결론과 실무 적용을 요약하고 있다. 이 결론으로 인해 기준서 적용에 있어 유의적인 변화가 예상되지는 않는다.

#### *Background*

IFRS 11은 2011년에 제정되었으며, 공동으로 지배하는 약정에 대한 재무보고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제정 이후 많은 실무 적용상 이슈가 제기되어 왔다.

IFRS 11에 대한 제한된 범위의 기준서 개정이 두 건 있었다. 하나는 공동영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회계처리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기업에 사업을 출자하는 회계처리에 대한 것이다. 2013년 11월부터 IFRS 해석위원회에 IFRS 11에 대한 이슈가 회의 시마다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공동약정의 분류에 있어서 ‘그 밖의 사실과 상황’에 대한 평가와 공동영업의 인식과 측정에 대한 이슈가 가장 많았다.

IFRS 11에 대한 사후이행검토(post-implementation review) 전에 추가적인 개정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에 IFRS 해석위원회는 일련의 회의 결과를 문서화하기로 하였다.

2014년 11월에 내린 잠정적인 결론은 검토의견 제출기간 후인 2015년 3월에 재검토된 후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SAMIL** | 삼일회계법인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15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http://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

## Implementation issues

### 1. ‘그 밖의 사실과 상황’에 대한 판단은 계약상 및 법적으로 이행 가능한 조건만을 고려해야 하는가?

계약상 및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사실과 상황이 분류의 판단에 있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해석위원회는 다음 두 가지 견해를 고려하였다.

- 계약상 및 법적으로 강제가능한 계약만 고려해야 하는가? 또는,
- 공동약정의 구조와 목적, 사업상 필요, 또는 과거 관행까지 고려할 것인가?

권리와 의무는 성격상 강제가능한 것이다. 해석위원회는 공동약정 분류의 판단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그 밖의 사실과 상황’은 강제할 수 있는 조건에 기초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 2. 공동약정의 산출물을 약정의 당사자에게 시장가격으로 매각하면 공동영업으로 분류될 수 없는가?

산출물이 시장가격으로 판매된다는 사실 자체가 공동약정의 분류에 대한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 약정의 당사자들이 공동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해석위원회는 공동약정이 그 밖의 사실과 상황으로 인해 공동영업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모두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당사자들이 약정의 자산에 대해 실질적으로 모든 경제적 효익(산출물과 같은)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 당사자들이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에 따라 약정에 제공된 현금이 공동약정의 부채를 결제하는데 지속적으로 사용된다.

당사자들이 산출물을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면서 제공되는 현금흐름이 약정의 부채를 지속적으로 결제하는데 사용된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당사자들이 부채를 결제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금을 생산하고 이를 약정의 당사자들에게 일반적인 LME 금시세로 판매해야 하는 공동약정을 고려해 보자. 금시세는 약정이 손실을 보는 수준으로도 변동할 수 있다. 이는 약정이 지속적으로 부채를 결제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와 달리 가격이 원가 수준 또는 원가에 일부 가산된 금액으로 결정될 수 있다. 이는 당사자들이 모든 산출물에 대한 권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동약정의 부채를 결제하는 사실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일 수 있다.

### 3. 그 밖의 사실과 상황을 평가할 때 어떤 요소가 관련성이 적은가?

#### *Nature of output*

해석위원회는 산출물이 대체가능한지 주문형인지 등 산출물의 성격이 그 밖의 사실과 상황을 평가할 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부채에 대한 의무를 고려할 때의 초점은 산출물 자체의 성격보다는 당사자들과 공동약정 간의 현금흐름에 있다.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15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http://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

### *Closely and fully involved parties*

그 밖의 사실과 상황에 대한 고려는 공동약정의 당사자들이 밀접하게 또는 전적으로 별도기구의 영업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 밖의 사실과 상황이 별도기구의 법적인 형식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부여된 권리와 의무를 넘어서는 것인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 *Financing from a third party*

제 3 자로부터의 자금조달 자체로 공동약정의 분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영업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조달된 자금을 상환하기에 충분하다면, 자금조달이 제 3 자로부터 제 공되었는지 공동약정의 당사자들로부터 제공되었는지의 여부는 공동약정의 분류와는 무관하다.

## **4. ‘실질적으로 모든 산출물’이 무엇인가?**

공동약정의 당사자들은 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약정의 자산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모든 ‘경제적 효익’에 대한 권리를 보유해야 한다. 약정에서 부산물이나 둘 이상의 생산물이 산출될 때는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면, 고가인 제품 A는 소량 생산되고 저가인 제품 B는 많이 양이 생산되는 경우처럼 말이다.

해원위원회는 경제적 효익은 당사자들이 자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과 관련된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산출물의 물리적인 양이 아니라 금전적인 가치가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

## **5. 두 가지의 약정 중 하나는 별도기구로 구조화되고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을 때 이러한 약정들이 다르게 분류될 수 있는가?**

그렇다. 별도기구의 법적 형식은 공동약정의 당사들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상이한 회계처리는 ‘경제적 실질’이라는 개념과 상충되지 않는다. 별도기구의 존재는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의 성격 및 이에 따른 약정의 경제적 실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6.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어떻게 재무제표에 인식해야 하는가?**

### *Revenue recognition when all of the output is taken by the parties*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이 해당 공동영업자에게 산출물을 매각 시 어떤 금액도 인식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산출물을 당사자들이 매입하는 공동영업이 있는 경우, 공동영업자는 산출물을 제 3 자에게 매각할 때 수익을 인식한다.

**Example 1:** 두 당사자 A 와 B 는 가스를 운송하기 위한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사용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한다. 당사자 A 는 40% 지분을, 당사자 B 는 60% 지분을 보유한다. 주주들이 100% 산출물을 원가보상 가격으로 매입하기로 약정하여, 공동약정은 공동영업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당사자는 공동영업이 산출물을 매각할 때 수익을 인식하지 않을 것이다. 이 때 수익을 인식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로의 산출물 매각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되는 때문이다. 당사자 A 와 B 는 공동약정으로부터 매입한 자신의 뜻의 산출물을 제 3 자에게 매각할 때 수익을 인식할 것이다.

### *Share of output purchased differs from the share of ownership interest*

공동영업자는 계약상 약정에서 명시된 뜻에 따라 자신의 자산, 부채, 수익과 비용을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영업자가 매입하기로 하는 산출물의 비율과 보유지분율이 상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때는 이러한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절한 회계처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판단이 필요한 것이다.

하나 이상의 공동영업자들이 보유지분율과 차이나게 공동영업에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요소나 약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다른 요소를 식별하는 것이 보유지분율과 산출물에 대한 뜻의 차이를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고려할 정보가 될 수 있다.

**Example 2:** 상기 Example 1의 상황에서, 당사자 A 와 B 가 파이프라인 용량의 50%씩을 사용하기로 계약상 약정하였다. 이런 산출물에 대한 뜻은 각각의 보유지분 40%, 60%와 차이 있다.

보유지분과 산출물에 대한 뜻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을 포함한다.

- 당사자들은 왜 모든 산출물을 구매하기로 하였는가?
- 당사자 중 일방이 더 많은 초기 자본이나 자산을 불입하였는가?
- 산출물에 대한 뜻은 시간 경과 시 변경되는가? 그렇다면 사유는 무엇인가?

당사자들이 약정의 모든 산출물을 원가를 회수하는 가격으로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상 조건은 당사자들이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게 한다. 이로 인해 공동영업으로 분류가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산출물, 즉 파이프라인 용량에 대한 뜻에 기초하여 공동영업을 회계처리한다.

당사자 A 는 당사자 B 보다 적은 자본을 불입하였다. 이 경우 공동영업에 대한 당사자 A 의 뜻 중 일부가 사실상 당사자 B 에 의해서 출자된 것이다. 계약상 조건에 따르면 산출물에 대한 뜻과 보유지분의 차이를 약정의 청산시점에 당사자 A 가 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 A 는 자산과 부채의 50%를 회계처리하며, 이와 공동영업에 출자한 40%와의 차이는 당사자 B 에 대한 채무를 나타낸다.

당사자 B 는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자신의 뜻을 50%로 인식할 것이다. 출자한 60%와의 차이는 당사자 A 로부터의 채권이다. 당사자 A 는 약정의 청산 시점에 이를 당사자 B 에게 지불할 것이다.

## 7. 공동영업자의 별도재무제표에서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의 회계처리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회계처리해야 한다. 그러한 권리와 의무는 연결재무제표에서나 별도재무제표에서 동일하다. 따라서 공동영업자의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서 동일한 회계처리가 요구된다.

해석위원회는 공동영업자는 별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서 별도기구인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추가적으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자체의 재무제표에서 공동영업의 활동을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 8. 별도기구인 공동영업 자체의 재무제표에서의 회계처리

IFRS 11은 공동영업자의 회계처리에 적용되며, 공동영업인 별도기구의 회계처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별도기구의 재무제표는 적용가능한 기준에 따라 작성될 것이다.

해석위원회는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회계처리에 있어 공동영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따른 효과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공동영업에 의해 보고되는 자산과 부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Implications and next steps*

위원회의 안건결정(agenda decisions)은 현재 잠정적이다. 안건 결정은 IFRS 본문과 같은 권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감독기관에서는 지침의 형태로 보기로 한다. 대부분의 기업은 오랜 기간 공동약정의 분류를 결정해 왔다. 하지만 별도기구로 설립된 공동약정이 공동영업으로 분류된다면 안건결정을 주의하여 읽고 고려해야 할 수 있다.

해석위원회는 안건결정의 내용은 IFRS 11을 적용하며 개발된 실무와 대체적으로 일관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안건결정에 따른 변경이 많지 않을 것이다.

해석위원회는 2015년 3월 회의에서 이를 재고려하고 최종결론을 내리기로 하였다<sup>(\*)</sup>. 비록 잠정적인 결론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수렴 기한은 2015년 1월로 종료되었지만, 해석위원회가 관점의 차이 또는 요약된 결론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기대한다.

안건결정에 포함된 지침을 따라 실무 관행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IASB는 2015년 말부터 시작할 예정인 IFRS 11에 대한 사후이행검토의 일환으로 추가적인 조치가 더 필요할 것인지 고려할 것이다.

<sup>(\*)</sup> 2015년 3월 해석위원회는 해당 이슈를 안건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